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-226호

**중소기업청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 
규정(안) 행정예고**

2013. 10. 7.

중소기업청

##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-226호

「중소기업청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(안)」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,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10월 7일

중소기업청장

### 중소기업청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(안) 행정예고

#### 1. 개정 이유

법률고문 위촉과정의 공정성·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송대리 위임 관련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「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·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」을 권고(13.1.29)함에 따라 이를 훈령제정을 통해 제도화하기 위함

#### 2. 주요 내용

- 법률고문·소송수행 변호사 선정과정 투명성 제고(안 제2조)
  -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 위임 시 소송수임료 2천만 원 초과 등 중요사건일 경우 공개모집 방식 선임

- 다만, 소송수임료가 낮은 경우, 긴급한 경우, 유사사건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의계약방식 허용

#### □ 청렴성 검증강화(안 제4~5조)

- 법률자문 의뢰 및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시 징계처분내역 열람 및 징계처분 전력자의 선임 제한
- 법률자문변호사의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,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전신고 및 사후 해촉·해임

#### □ 특혜성 소송사건 몰아주기 방지(안 제6조, 제2조)

- 우리 청 및 그 소속기관 퇴직 후 일정기간(1년) 이내인 자에 대한 소송사건 위임 제한
- 소송대리변호사 선임 시 전문성 등을 고려하고,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 소송대리 위임의 과도한 편중 방지

#### □ 사후관리 강화 및 소송 운영현황공개(안 제8조)

- 외부 변호사에 의한 자문 또는 소송 위임 현황 공개
- 업무성실도, 전문성 등 실적 평가 후 실적이 저조한 자에 대한 자문의뢰 및 소송 위임 배제

### 3. 의견 제출

「중소기업청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(안)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(우편번호 : 302-701, 주소 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

189(둔산동, 정부대전청사) 중소기업청, 참조 : 행정법무담당관실, 전화  
042-481-4360, 팩스 042-472-3276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【붙임】

## 중소기업청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

발령 2013.10.00 중소기업청 훈령 제000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중소기업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(중소기업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·행정소송·행정심판·헌법소원 및 그 밖의 법적분쟁사건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송사건등의 위임)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1. 변호사
2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
3. 「변호사법」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
4. 「변호사법」 제58조의18 따른 법무조합
5. 「정부법무공단법」에 따른 정부법무공단

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할 때에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중요사건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다. 다만, 소송수임료가 낮은 경우(구상금, 채권 시효연장 등), 긴급한 경우(집행정지, 가압류, 가처분 등),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전문성, 소송 수행 실적,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,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 소송대리 위임이 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조(법률자문 의뢰)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.

1. 중소기업청 업무관련 법령의 제·개정, 해석 및 적용
2. 계약서,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·작성 등
3. 기타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

② 법률자문 의뢰에 따른 자문료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.

제4조(징계정보 조회) ① 법률자문 의뢰 및 소송사건 등의 변호사 선임 시에는 「변호사법」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처분내역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·등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선임하려는 변호사가 「변호사법」 제90조에 따른 제명, 정직, 과태료, 견책의 징계처분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선임을 제한한다.

1. 제명 : 10년
2. 정직 : 7년
3. 과태료 : 5년
4. 견책 : 3년

제5조(이해충돌 방지) ① 법률자문변호사와 소송대리변호사(이하 "법률자문 변호사등"이라 한다)는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【별지】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금품수수·부당한 알선·청탁
2. 중소기업청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
3.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
4. 미공개 정보이용,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

② 법률자문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.

1. 중소기업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
2. 중소기업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, 협회, 이해단체 등에 임원,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거나 자문·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
3. 중소기업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·운영하는 경우
4. 담당사건이 법률자문·사건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

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·해임 하여야 한다.

제6조(퇴직공무원의 소송사건 위임 제한) 중소기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는 퇴직 후 1년간 소송대리변호사로 선임할 수 없다. 다만,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라도 소송대리변호사가 될 수 있다.

제7조(사례비 등의 지급) ① 소송의 위임에 따른 선임료(착수금 및 승소 사례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등의 세부사항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. 이 경우 선임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1. 소송사건등의 결과가 국가주요시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
2. 소송사건등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
3. 소송사건등의 난이도 및 소요시간
4. 소송사건등의 중요도

②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 보수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「변호사 보수 규정」(법무부 훈령)에 따른다.

제8조(정보의 공개 및 사후관리) ① 중소기업청장은 외부 변호사에 의한 자문 또는 소송 위임 현황을 공개한다.

②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변호사의 업무성실도, 전문성 등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, 실적이 저조한 자를 차후 자문의뢰 및 소송 위임에서 제외한다.

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10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경과조치) 중소기업청고문변호사위촉등에관한규정(중소기업청 훈령 제148호, 2004.01.06)은 폐지한다.

【별지】

## 청 럽 서 약 서

본인은 중소기업청 법률자문위원(소송대리인)으로서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.

① 금품·향응 수수, 부당한 알선·청탁, ② 중소기업청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직무수행, ③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, ④ 미공개 정보이용 등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.

만약 위 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촉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2000. . . .

소속 :

성명 : (인/서명)

중소기업청장 귀중